

등록번호	시장경제과-48214
등록일자	2015.11.18.
결재일자	2015.11.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경제진흥팀장	시장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주일	김송희	이재호	박진석	황치영	11/23 최창식
협조	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	이수정 이창하 권순우			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

기획재정국
시장경제과

요 약 지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1. 제안이유

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,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융자한도액 개정 (안 제6조 제1항 제1호)
- 나. 대출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조건 개정 (안 제6조 제1항 제3호)
- 다. 수용업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작성 관리하도록 개정 (안 제8조)
- 라. 제출 첨부 서류 정리 (안 제4조 제1항)
- 마. 시행규칙 내용 중 변동사항 정비 및 미비점 개선 · 보완
(안 제3조, 제7조 및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제2항
 - 2) 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 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입법 예고 : 대 상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



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변경하고,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내용정비 및 용어 개정 등을 통하여 중구 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

I 개정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제2항
- 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 제3항
- 4/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회 의결(2015. 10. 15.)

II 개정 이유

-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의 필요성 (제조업체 3억 그 외 업체 2억)
- 상환조건 조정의 필요성 (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)
- 시행규칙 내용 중 변동사항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의 개선·보완의 필요성

III 주요 내용

-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융자한도액 개정 (안 제6조 제1항 제1호)
 - 제조업체는 3억 이내, 그 외 업체는 2억 이내로 개정
- 대출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조건 개정 (안 제6조 제1항 제3호)
 -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
- 수용업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작성 관리하도록 개정 (안 제8조)
 - 현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

제출 첨부 서류 정리 (안 제4조 제1항)

- 현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출 첨부 서류의 삭제 및 추가

시행규칙 내용 중 변동사항 정비 및 미비점 개선·보완
(안 제3조, 제7조 및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서식)

IV

추진 일정

2015.11 : 조례개정 방침 수립

2015.11 : 성별영향분석평가,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

2015.11 : 입법예고(20일간)

2015.12 :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

2015.12 : 자치법규(규칙) 공포 및 시행

V

참고 사항

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제12조 제3항

예산조치 : 비예산

합 의 : 합의불필요

입법예고 : 대 상

붙임 1.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조표 1부. 끝.